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함(안 제45조의2 신설).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II. 검토의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필요

안 제50조는 제33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위기품목¹⁾의 판매자 등이 행하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²⁾

이 때, 해당 규정의 추상성으로 어떠한 행위가 “매점매석 행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바,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부과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³⁾에 반할 우려가 있음.

해당 규정은 위기품목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자·수입자도 매점매석 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판단기준을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예컨대, 위기품목의 수입자가 단순히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 이를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사 입법례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
-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가8 전원재판부]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고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게 된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라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음.⁴⁾

[현행 및 개정안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과의 비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u>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u>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물가의 안정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효하여 매점매석 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음.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부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5)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일례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정⁶⁾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⁷⁾는 매점매석 행위 주체를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2020.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1년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규정하여 영업 시작시점에 따른 각기 다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5)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 - 41 호)

6)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해당 고시는 2020. 2. 5. 최초 제정·시행(기재부 고시 제2020-3호)된 이후 총 4차례 개정·유효기간 연장되어 2021. 7. 7. 폐지(기재부 고시 제2021-17호)되었음.

다만,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수급·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국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이를 감안할 때, 해당 벌칙 규정에서 “매점매석 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됨.

따라서, 안 제50조(벌칙)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u>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u>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u>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u> 는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